

예산·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226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1995. 11. 17.

발의자 : 심찬남의원의외 5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0조,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삼척시의회 정기회기간중 심의할 '96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,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, 94예비비지출 승인안, 96지방채 발행계획안등 총 5건의 예산·결산 관련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·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위원구성 : 의원 14인(의장 제외)

나. 위원장 및 간사 선출 :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위원간의 협의에 의거 선출

다.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 : 5건

- '9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
- '95년도,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
- '94 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승인안
- '94 예비비지출 승인안
- '96 지방채 발행 계획안

라. 예산·결산관련 의안 심사일정

: '95.12.11(월)~12.20(일)[10일간]

○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

: '95.12.11(월)~12.17(일)[7일간]

— '96 당초 예산안

○ 예산·결산 특별위원회 심사

: '95.12.18(월)~12.20(수)[3일간]

— '96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

— '95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

— '94 회계년도 세입·세출결산 승인안

— '94 예비비 지출 승인안

— '96 지방채 발행 계획안

※ 참고사항

○ '96 당초예산안 규모 : 총 129,848,866천원

— 일반회계 : 117,780,435천원

— 특별회계 : 12,068,431천원